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3-4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3년 1월 11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 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1. 11. ~ 2023. 1. 25.(15일)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이*근	63.09.06.	0178200247100008237 0178200274100008860	₩31,081,200 ₩50,580,000	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
2	김*환	70.06.22.	0178200274100003493	₩31,860,000	충북 충주시 봉황 2 길
3	황*규	68.02.15.	0178200274100008856	₩29,916,000	서울시 강동구 구천연로 47 길
4	최*규	59.03.26.	0178200274100008235	₩12,836,880	충북 청주시 흥덕구 과상미로 17 번길
5	김*숙	52.04.18.	0178200274100003470	₩30,132,000	충북 제천시 칠성로
6	이*철	75.08.23.	0178200274100003482	₩31,212,000	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로
7	이*규	72.11.30.	0178200274100003494	₩31,644,000	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16 번길
8	김*수	65.11.01.	0178200274100008241	₩31,428,000	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5 번길
9	남*순	55.01.06.	0178200274100008857	₩29,916,000	충북 제천시 승문로
10	장*수	62.01.05.	0178200274100000186	₩18,000,000	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31 번길
11	박*주	75.10.19.	0178200274100000185	₩2,260,000	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시내 2 길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2	신*식	59.04.02.	0178200274100000194	₩18,000,000	경기도 가평군 꽃동네길
13	신*수	53.07.10.	0178200274100008243	₩44,604,000	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
14	채*진	58.02.14.	0178200274100000193	₩6,300,000	세종시 장군면 별신당길
15	조*윤 (**플러스)	81.02.02.	0178200274100000187 0178200274100000182 0178200274100000183 0178200274100000184	₩18,000,000 ₩30,000,000 ₩26,200,000 ₩16,200,000	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1045 번길
16	(유)프라**	120114-0002***	0178200274100000189 0178200274100000188	₩24,000,000 ₩24,000,000	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890 번길
17	이*익	84.11.22.	0178200274100008841	₩31,860,000	강원도 홍천군 내면 덕두원길
18	박*애	63.06.24.	0178200274100000192	₩18,000,000	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암로
19	우*철	73.02.25.	0178200274100003483	₩31,860,000	전북 남원시 요천로
20	강*규	72.01.03.	0178200274100008244	₩44,604,000	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 산단로

4. 문의처 :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

(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, ☎ 042-347-2103, 2105)

5. 공고내용 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
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
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
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
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